

12. 폐기물 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21.6.22.개정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“폐기물”, “지정폐기물”, “의료폐기물”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폐기물”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- ② “지정폐기물”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(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)
- ③ “의료폐기물”이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·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 (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)

제4조(금지사항) 교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실습실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
- ②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
- ③ 폐기물관리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

제5조(업무관장) 폐기물 관리는 총무과에서 주관한다.

제6조(책임과 역할) 폐기물 처리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배출기관의 장 : 배출기관의 장은 실습실 폐기물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당해 실습실에 대하여 관리, 감독하여야 한다.
- ② 배출자 : 배출자는 실습실의 사용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폐기물을 복도·계단·옥외 등에 수집 보관을 금지한다.
- ③ 최종 처리자 : 주관부서인 총무과는 분류, 수집, 운반,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,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배출원점 및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폐기물 수집 및 보관) 폐기물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배출기관의 장은 실습실 책임자를 지정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실습실 책임자는 폐기물별 보관용기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용기가 쓰러져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실습실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폐기물 처리 주관 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.
- ④ 실습실 폐기물 반출 시 주관 부서의 담당자는 보관용기에서 폐기물 유출 및 밀폐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폐기물 주관부서 담당자는 실습실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종류별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폐기물처리관리) ①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.

- ② 폐기물 처리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폐기물을 보관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

야 한다.

- ③ 주관부서 담당자는 폐기물운반업체,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④ 폐기물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